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8 | 2024.01.15 (2024.01.08~01.14)**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1.0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08~01.14)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3일(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23년 176억 원에서 '24년 73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 분야(트랙)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24년, 3개 과제 60억)'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 성능평가('23년 100개사 → '24년 150개사)에서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 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 표본(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23년 372억 원에서 '24년 2,331억 원으로 확대하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 고용영향 사전평가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교육지원, 고용안정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자격기준 등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및 지원과 육성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지난 주에는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고,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배진교의원 등 10인)**」,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주요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측의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핵심에너지 비축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등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농해수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는 1/15(월) 14시 법안 심사 예정이며,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조태용) 인사청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형배·장경태 의원실 주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1/15(월) 10시, 의원회관 1세미나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9
- 여성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9
- 위치정보 산업 지원 대폭 확대(방송통신위원회) 10
-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및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발간(금융감독원)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4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5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환경부)..... 15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17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19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부)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2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환경부) 22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3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3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4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5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고용노동부)	26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고용노동부)	26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7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27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	2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31
•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배진교의원 등 10인)	32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33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5인)	33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34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	34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3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6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37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3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38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바로가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1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 전기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4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2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3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3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4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08~01.14) [바로가기](#)

- [중대재해]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 [중국]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시사점
- [환경]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및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 [중대재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에너지·자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에너지정책방향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2024-01-10

정부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함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②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 (원시취득세 감면)
-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 활성화

③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④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 해소
-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 확대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비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 적극 추진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 · 재개발	①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②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③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④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①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③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소규모정비 · 도심복합사업	①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②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③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④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공급 여건 개선	① 도시 · 건축규제 완화 ② 세제 · 금융지원
	활용도 제고	① 구입 부담 경감 ②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③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④ 신축매입약정 확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①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②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③ 종합 지원체계 강화 ④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①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②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①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②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건설경기 활력 회복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① PF대출 지원 ② 유동성 지원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① 지방 사업여건 개선 ② 공공임대 참여지분 조기 매각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① 공적 조정위원회 ② 민간 사업장 공공 인수 ③ 정상화 펀드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① 공사 재개 지원 ② 수분양자 보호 ③ 협력업체 보호
	건설투자 활성화	① 재정 조기집행 ② 민자사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4배, 핵심광물
비축지원 6배 확대 등

2024-01-1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3일(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23년 176억 원에서 '24년 73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 분야(트랙)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함

또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24년, 3개 과제 60억)'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23년 100개사 → '24년 150개사)에서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표본(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 '23년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4년에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23년 4.6억→'24년 7.8억)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공급망안정품목 포함) 수입보험 한도도 올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
- ②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23년 372억 원에서 '24년 2,331억 원으로 확대하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
 - 리튬('23년 5.8일→'24년 30일분),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희토류('23년 6개월→'24년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하여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도 착수할 예정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2024-01-08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하고, 여성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새싹기업 육성(엑셀러레이팅)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금액인 104.9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예산 : ('21) 88억원 → ('22) 88억원 → ('23) 101억원 → ('24) 104.9억원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 지원
- ②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 실시
- ③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 산업 지원 대폭 확대

2024-01-08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보다 대폭 늘린 19.7억원(8억원 ↑)으로 편성하고,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힘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2024년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함

그동안 위치정보 사업자들은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역량의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아왔으며,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2024년에는 공모전 입상 및 지원 대상을 전년도 30개에서 75개로 확대할 예정임

공모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년층 대상의 아이디어 발굴 분야, 상용화·사업화 단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 지원 분야로 나눔
 - 올해는 지원 기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사업화 지원 분야의 비즈니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공공·안전과 생활밀착형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집함

<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

연도	2023년			2024년		
	분야 구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청년(만3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상용화·사업화 단계의 중소·영세사업자	청년(만3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공공·안전 부문	생활밀착형 부문
		6개	24개		상용화·사업화 단계의 중소기업	30개
				15개	30개	30개

- 공모전을 통해 각 분야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 등)과 상금을 수여하고 위치정보 사업 등록·신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진단, 국내·외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특허출원 등에 걸쳐 기업 특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됨

- ②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미만 신생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진단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환경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상시 지원할 예정임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발간

-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024-01-08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함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24.1.12. 2.11.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 대상)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법 제33조의2) 및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예 : ABCP, AB단기사채 등)

-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
-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

< 신규 도입된 규제 >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제재 조치
법 § 33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법 § 33조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	과징금 최대 20억원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함

-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

*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 및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

** 기존에 제출했던 발행내역 외에 위험보유 의무 정보 제출 관련 프로세스 추가 등

-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

* 위험보유 의무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등



- ③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 발간
 -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 수록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19 시행예정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절차 및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정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절차 (제7조제2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경비의 조달 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제11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외부전문기관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③ 본인 확인 의무 위반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상향 (별표 11 제2호두목 신설)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2024-07-10 시행예정
---------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함 (제2조)
-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5조)
- ③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함 (제6조)
- ④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제13조)
- 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제20조)
- ⑧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
- 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1-09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할 경우 수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제16조제6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10 시행예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대상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9호, 제22조제1항, 제33조제10항, 제38조의3 신설, 제44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법률

2025-01-10 시행예정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제2조)
- ② 전기산업인의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 (제5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및 제8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함 (제15조)
- ⑦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

2027-01-10 시행예정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21호의2 신설, 제76조의7 신설)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7-10 시행예정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10 시행예정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사업예산 및 결산 등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8조의9,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제16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4-01-09 시행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8조제1항)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4-07-10 시행예정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명시하고, 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부터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또는 인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8조제1항, 제35조, 제52조, 제79조제5호의2, 제81조제17호 등)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10 시행예정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2조의2제2항, 제25조의2, 제40조의2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12 시행

식품의 제품명 등 사항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경우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거나 도안·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하는 한편,

종전에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만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을 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 등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6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 산정방식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감면 대상의 범위와 기준 등 마련 (제379조의2 신설)

- 수사기관 등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위반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수사기관 등에 자수 등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최초의 자인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위반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도록 함

② 형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제380조제1항 후단 신설)

-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부과하도록 함

③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의 부당이익액 산정방식 마련 (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신설)

-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공개 이후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여 얻은 실현이익은 매매한 특정증권 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공개 이후 특정증권 등을 보유하여 얻은 미실현이익은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이 상승하다가 최초로 멈춘 날 또는 최초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날 전일의 최종가격과 가중평균 매수단가와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특정증권 등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 등의 공개 이후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특정증권 등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이 하락하다가 최초로 멈춘 날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날 전일의 최종가격과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08. ~01.22.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2023년 4월 12일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10.24. 공포, 2024.3.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안 제2조의2)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 ②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안 제2조의3)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 ③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도입 (안 제8조)
 -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
- ④ 교육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 (안 제10조)
 -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 전담 치유·회복 전문기관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운영 업무 위탁 수행 시 인증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도록 함
- ⑤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도입 (안 제11조)
 - ‘학교폭력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조사관의 자격·역할 등을 정함
- ⑥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안 제14조, 제31조의2)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조사관 지원·협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 위촉 등 역할을 강화함
- ⑦ 학교 관리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 (안 제17조)
 - 학교관리자(학교의 장 및 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⑧ 즉시분리 관련 안내서 위임 근거 마련 (안 제17조의2)
 -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분리 기간, 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안내서를 통해 정하도록 함

⑨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운영 (안 제18조의2)

-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의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임면기준 등을 정함

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안 제18조의3)

-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내용·방법 및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

⑪ 학생부 기재 회피 목적 자퇴 방지 (안 제20조의2)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을 제한함

⑫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보장 (안 제21조)

-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더해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함

⑬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사실확인 조사 (안 제22조)

- 피해학생 측이 교육장·학교장의 조치 지연·징계 미이행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하여야 하는 상황, 조사 방법 등을 정함

⑭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안 제23조의2)

-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예외 등을 정함

※ 문의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http://www.moe.go.kr) (전화: 044-203-6978, 팩스: 044-203-6390)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0.
~01.22.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또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 (안 제21조 및 제22조)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및 수행 업무, 기관의 성립·운영 등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 ②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 내용을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으로 변경 (안 제21조)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대상 및 수행 업무, 기관의 계획 수립·운영 등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

※ 문의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전화: 044-203-6978, 팩스: 044-203-6390\)](tel:044-203-697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2.
~02.2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 (안 26조)
- 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②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안 별표5)
-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246, 팩스: 044-203-3465\)](tel:044-203-224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1.
~02.20.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 (안 [별표2], [별표5], [별표6])

※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전화: 043-870-5455, 팩스: 043-870-5677\)](tel:043-870-5455)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1.
~02.20.

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전환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지능정보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1]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디지털 전환의 범위로 규정

②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탄소중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2]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로 규정

③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 마련 (안 제17조의2)

-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심의와 함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전화: 044-203-4231, 팩스: 044-203-4722\)](tel:044-203-4231)

환경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4.01.08.
~01.31.

먹는샘물등의 라벨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용기 재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신규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등의 날개 제품을 대상으로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의무화함에 따라, QR코드 화면 내 판매정보 표시 및 제품의 홍보·광고 범위 등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시범운영 및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먹는샘물등의 날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경우 타 표시방법(몸통라벨, 병뚜껑라벨 등)과 병행을 허용 (부칙 제2조)

② 주표시면의 정의 구체화 및 정보표시면 정의를 신설하고, 먹는샘물등의 날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시 QR코드 화면 내 제품에 대한 홍보·광고를 허용 (안 제2조, 제14조)

③ 세부 표시기준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글자크기, 주소 표기 등)은 본문 외 별표에서 규정 (안 별표 2)

※ 문의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1-7185, 팩스: 044-201-7189\)](tel:044-201-7185)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1.11.
~02.20.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위원 본인 희망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해촉 가능토록 개선함 (안 제6조)
- ②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 (안 제8조)
 -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취급물질 등을 제출자료의 종류로 규정함
- ③ 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을 규정 (안 제11조의2)
 -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④ 손해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태조사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함 (안 제33조)
- ⑤ 손해조사, 취약계층 소송지원 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에 접근 가능토록 함 (안 제34조)
- ⑥ 보험 가입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 (안 별표 7)
 -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함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tel:044-201-6811) (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6823)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1.11.
~02.20.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는 보장계약 서류 제출 기한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 함 (안 제8조)
- ② 약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환경피해준비금,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③ 손해조사 절차 마련 (안 제13조의2)
 - 손해조사 전에 미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 및 조사대상 사업자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손해조사 결과는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 ④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을 신설 (안 제20조의2)
 - 보험자·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취급물질·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tel:044-201-6811) (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6823)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12.
~02.02.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규정 (안 제35조)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tel:044-201-6811) (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7376)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12.
~02.02.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시행령 개정 따른 부과 대상자도 추가 (안 제29조)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7376)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4.01.11.
~02.2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안 제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 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안 제3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 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③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교육지원 (안 제4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고용안정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자격기준 (안 제5조)

-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⑤ 관계 기관간의 협조 (안 제6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⑥ 권한의 위임 (안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398, 팩스: 044-202-7398\)](tel:044-202-7398)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2024.01.11.
~02.2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고용안정 지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 제2조)

- 고용안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398, 팩스: 044-202-7398\)](tel:044-202-7398)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08.
~01.18.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예 따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4항)

- 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문배송시설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주문배송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함

②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안 별표1 제4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 용도를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http://www.kogt.go.kr) (전화: 044-201-3757,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4.01.11.
~02.20.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및 지원과 육성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종류 (안 제2조)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특구연계사업의 종류를 정함

②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 등 (안 제3조)

-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필요한 사항의 요청과 협의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정함

③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수록 내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정에 관한 고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정시 고려 사항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④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 (안 제8조 및 제9조)

-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 도심융합특구의 관리 (안 제10조 및 제11조)

- 특구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장·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해제시 고시·통보·공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의 대행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청·내용·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방법·조건,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범위, 준공인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⑧ 우선 적용 검토 사업구역 및 특례 적용 법률 (안 제19조 및 제20조)

-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정부가 도심융합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 할 수 있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와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법률의 종류를 정함

⑨ 도심융합특구 지원기관 (안 제21조 및 제22조)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 지원 및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종류를 정함

⑩ 도심융합특구 성과평가 시 고려사항 등 (안 제23조)

- 도심융합특구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시 수록내용, 성과평가 시 고려하여야 사항 및 평가결과 주요내용의 공개방법을 정함

⑪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례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 입주기업 직원 등에 대한 주택특별의 특별공급 기준, 특구 내 특례학교 추천 기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등 특례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

⑫ 특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구역 밖 사업 (안 제30조)

-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양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특구개발사업의 절차를 준용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함

⑬ 열람 및 보관대상 관계서류 (안 제31조)

-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의 내용을 정함

⑭ 위임 가능한 권한과 업무 (안 제32조)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 등에위임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를 정함

⑮ 과태료 부과 기준 (안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전화: 044-201-4731, 팩스: 044-201-5565)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서식, 특구개발사업내 행위허가의 기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구성·선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서식 등 (안 제2조)

-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함

② 간이공작물의 범위 (안 제3조)

- 간이공작물의 범위(안 제3조)

③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 대행신청서 (안 제4조 및 제5조)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④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기준 등 (안 제6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시의 고시 내용을 정함

⑤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변경 승인신청서 (안 제7조)

-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함

⑥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안 제8조)

-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 등 (안 제9조)

-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 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는 준공검사확인증 서식 등을 정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mailto:국토교통부_성장거점정책과) (전화: 044-201-4731, 팩스: 044-201-5565)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2024-01-11 발의
-------	---	---------------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낙찰자와 결탁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應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입찰 경쟁을 방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수개의 입찰에 참가할 입찰부문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자들이 낙찰받은 계약금 또는 수주 물량의 비율과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둘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여 입찰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2024-01-12 발의
-------	---	---------------

현행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서는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규상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동행위의 수(數)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종기(終期)가 달라짐에 따라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에 차이가 생기고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6항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2024-01-11 발의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고,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역공공은행에 적용하되, 「은행법」에 따른 인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등은 적용을 배제함 (안 제4조)
- ③ 자본금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50억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함 (안 제8조)
- ④ 지역공공은행에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은행감독위원회를 두고,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지방의회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은행감독위원회 내에 감사 소위원회를 둠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 ⑤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개인 이용자로부터는 은행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함),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안 제23조 및 제25조)
- ⑥ 지역공공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리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지급하는 원리금의 한도 등에 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을 준용함 (안 제26조)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33조)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 (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2024-01-10 발의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에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점과 비교하여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이사 인원수를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5인)

2024-01-11 발의

현행법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예선(曳船)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예선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외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은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공공성이 짙은 예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과당경쟁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방지하고 예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등을 대신하여 예선의 배정 등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업자는 예선업 등록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명으로 예선업을 등록한 후 스스로가 경영하는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만연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예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2024-01-08 발의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인력·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2인)**

2024-01-11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특화단지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그런데 용인, 화성, 안성, 평택, 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K-반도체 벨트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제1호 삭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2024-01-11 발의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나 경제적 위기 발생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핵심에너지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수송이 어려워질 경우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시간 지연 또는 운송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주요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 비축 및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측의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미리 대응하도록 핵심에너지 비축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관리방안과 수송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핵심에너지, 에너지안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비롯하여 핵심에너지 수송에 관여하는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 핵심에너지 화주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 ④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둠 (안 제6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안 제8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핵심에너지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에너지를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음 (안 제9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10조)
- ⑧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11조)
- ⑨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 위원회를 둠 (안 제12조)
-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안 제14조)
- ⑪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급안정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 제15조)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공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 제16조)
-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핵심에너지 화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 제17조)
- 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및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8조)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4-01-08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일괄 적용해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돼 왔음.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안 제54조)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2024-01-08 발의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보조·융자제도의 실무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전기자동차로 제작·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40여억 원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58조제20항 및 제82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4-01-08 발의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이후 2011년 7월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도 확대 되었음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그 결과, 자영업자 역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填)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2024-01-09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차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28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4-01-08 발의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안 제55조제4항)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4.01.0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협회가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 및 폐지 시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직접 수행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우정사업 중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 진흥 등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합동참모의장이 인정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을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지하공간 중 ‘광역철도’를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로 함

행정안전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금연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흡연 또는 표지 설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전기설비의 해체 공사’를 추가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 시 사용 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재정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조치 등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신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송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하였으나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지역의 신규 시설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허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송전 제약발 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설계업자·감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발명 권리승계에 대한 효력 시점을 ‘승계 통지 시’에서 ‘발명 완성 시’로 변경함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제정법으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영업자가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 요건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함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에 대해 확인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의 모양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섭취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함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장품제조업자 등이化粧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문언을 명확히 정비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신설하여 식약처장이 이를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임상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개선함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 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함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함
- 금지·제한·허가 물질의 용도에 따른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관련 허가제도를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허가·신고 제도로 차등화 함
- 국외 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독물질의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 함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인 연간 제조·수입량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개 및 적정성 검토 근거, 제3자의 수정 요청 근거 등을 마련함

국토교통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된 상가의 소유권을 법 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차단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농해수위	안전조정위	1/15(월) 14:30	- 법안 심사
정보위	전체회의	1/16(화) 11:00	-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1/15(월) 10:00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	민형배 · 장경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01/16(화) 14:00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	이상헌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16(화) 16:00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유해발굴 및 봉환 토론회	우원식 · 김성주 · 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01/17(수) 14:00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	홍석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01/18(목) 14:00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김영주 · 홍익표 · 이상헌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19(금) 14:00	제22대 총선, 여성 후보 당선을 위한 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한국여성의정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15(월)	「이달의 입법민원」 (2023. 12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17(수)	「금주의 서평」 제662호 발간 - 도서명 :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저 자 : 제이슨 브레넌	국회도서관	
	1/18(목)	「현안, 외국에선?」 제74호 발간 -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1/16(화) 14:00	부동산 PF 대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17호
	1/17(수) 10:00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 · 보좌진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목) 10:00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신동근 · 고영인 ·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목) 14:00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박수영 의원실, 이데일리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목) 14:00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인재근 의원실, 사단법인 온울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목) 14:00	인술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1/8(월)	「팩트북」 제108호 발간 - 사이버안보	국회도서관	
	1/10(수)	「금주의 서평」 제661호 발간 - 도서명 :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 - 저 자 : 허남철		
	1/10(수)	「World&Law」 제2024-1호 발간 - 금융교육,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1/12(금)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1(목)	「이슈와논점」 2174호 발간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8(월)	중대재해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1/10(수)	중국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시사점
1/10(수)	환경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 공개 확대 및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1/11(목)	중대재해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12(금)	에너지 · 자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에너지정책방향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